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7일, 김소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9.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 9.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소희 의원)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

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2월 6일 제정되어 2025년 2월 7일 시행되었음.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 설비의 구축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¹⁾ 제품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이라는 새로운 기술개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써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용화까지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구매자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

1)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보조·융자)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원안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붙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조·용자)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39조(보조·용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